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25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707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나251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소60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8. 1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10. 13. 선고 2021가소6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반환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2. 13.과 같은 달 14., 같은 달 16. 3차례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피고의 부친 C의 유튜브 후원계좌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송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원고가 송금한 10,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2020. 12. 22. 우리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은 금원의 송금이 착오송금임을 신고하자, 우리은행 직원은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의 반환에 동의하였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약정에 기하여 약정금 10,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3. 2,000,000원, 2020. 12. 14. 2,000,000원, 2020. 12. 16. 6,400,000원을 피고의 부친 C의 유튜브 후원계좌인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송금을 한 경위, 이 사건 송금 행위 전후하여 피고의 부친인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 사건 송금 행위 전 원고의 C에 대한 송금과 C의 반환 및 원고의 재송금 등이 반복되었던 점, 원고가 송금한 피고의 계좌는 C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의 구독자가 후원금을 보내는

공식계좌로서 원고 역시 위 유튜브채널의 구독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착오송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통해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인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